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89호 2024. 5. 23.(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91호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1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89호

사천시 고시 제2024-91호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4. 5. 23.

사천시시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4. 9. 2.	2024. 9. 2.

사 천 시 공 보

제889호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세부내용	제외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
	·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수출 기업인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천시청 세무과(☎ 055-831-2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